

수원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58059(본소), 2021나58066(반소)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58059(본소), 2021나58066(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742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변론 종결2022. 4. 5.

판결 선고2022. 5. 31.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74297(본소),

2019가단77258(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2. 5.

-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4,620,372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397,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12,5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8,397,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7행 "쇄석기(크랏샤)"를 "쇄석기(크랏샤, 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첨부한 견적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작업 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하여 별도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크라샤 MCC판넬에서 크라싱플랜트까지의 전기공사에 들어가는 전선추가분과 변압기에서 MCC판넬까지 전선인입 및 현장조명등 공사, 환경관련설비, 인허가사항, 견적 외 사항은 피고가 공급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는 2019. 3. 1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한 2019. 4. 25.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늦어도 2019. 3. 16.경에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기존 사업장에 설치된 이 사건 쇠석기를 해체하여 춘천시 D에 재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와 같은 기계 이전 설치작업의 완료 여부는 이전되어 설치된 기계가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F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위 감정인의 감정서에 첨부된 F 작성의 거래명세표(감정서 부록 2. 수령자료)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쇠석기를 이동 설치하는 장비인 크레인을 2019. 1. 28.부터 2019. 3. 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장비사용료 및 재료비 명목으로 합계 33,713,7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2019. 3. 19.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③ 위 감정인의 감정서에 첨부된 F 작성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F는 2019. 1. 25.부터 2019. 3.

16.까지 이 사건 공사에 인부 15명을 투입한 후, 자신을 포함한 인부 16인의 노임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54,763,07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2019. 3. 19.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④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크라샤 MCC판넬에서 크라싱플랜트까지의 전기공사에 들어가는 전선추가분과 변압기에서 MCC판넬까지 전선인입'은 피고가 담당하기로 정하였는데(특약사항 제3항), 위 2019. 3.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기인입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쇠석기의 시운전 가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은 2019. 3.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인입공사가 마쳐진 후인 2019. 4. 25. 이 사건 쇠석기의 시운전 가동을 실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9,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공사대금으로 합계 14,131,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골재선별기 수평작업	2,165,801원
2	안전통로 보완작업	2,345,556원
3	전자석 재설치작업	599,971원
4	크레인 장비비 추가투입	6,100,000원
5	풀코드 스위치 추가작업	2,520,614원
6	벨트 재정착 추가작업	400,000원
합계		14,131,942원

(나)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인의 지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경 이 사건 쇄석기의 수평작업, 안전통로 설치작업, 전자석 재설치작업, 풀코트스위치 설치작업, 벨트 재정착작업 등을 각 수행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위 표 기재 각 금액이 소요된 사실, 이 사건 견적서에 해당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명시적인 추가공사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견적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는 전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견적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각 공사의 세부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견적서에 의할 시 쇄석기 설치공사는 각종 장비대 및 비용 등을 제외하고 "㉠ 죠, 콘, 스크린 각종 콘베어 설치 33,000,000원, ㉡ MCC판넬에서 크라싱클랜트 내선공사 3,000,000원, ㉢ 콘베아 역회전 방지장치 및 구동부 안전카바 1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죠, 콘, 스크린 각종 콘베어 설치작업의 상세항목에 대해서 기재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토목공사의 하자에 따라 지반이 침하되어 이 사건 쇄석기의 수평작업을 다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통로 보완작업, 전자석 재설치작업, 풀코트스위치 설치작업, 벨트

재정착작업을 추가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스스로 견적한 크레인 물량보다 더 많은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견적서를 작성한 원고의 책임에 속하는 부분일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총 물량이 계약 당시 보다 증가되었거나 약정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확정금액이 아닌 물량에 따른 추가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추가로 소요한 크레인 비용을 피고에게 추가공사비로 구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위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절차를 거친 바 없고, 해당 공사의 각 수행에 앞서 피고에게 위 공사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금액정산에 관한 협의도 거친 바 없으며,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에서 2020. 1. 30.자 준비서면으로 추가공사대금 주장을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 바도 없다.

(3) 작업인원 미지원에 따른 공사비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인원 2~3명을 고정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작업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1,288,430원이 소요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인원 2~3명을 고정으로 지원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작업인원을 지원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부분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작업인원의 지원이라는 작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건대, 피고가 작업인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공사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단 제1행 "원고가 시공할 이 사건 공사에 선행하여 피고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기초토목공사가 언제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을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선행하여 피고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기초토목공사가 2019. 1. 25.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으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재광

판사이명선

판사이나경